

議案番號	第 282 號
議決年月日	1995. 5. 27 (第 33 回)

議決事項	원안 가결
------	----------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5. 10.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출연월일 : '95. 5. 10

제 출 자 : 고성군수

의안	
번호	282

1. 제정사유

-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침탈할 수반하는 도로 복구공사의 비용을 당해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도로의 원상복구비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로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였으며, 도로 원상복구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함.

3.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해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해부분및 간접손해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해부분"이라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해부분"이라함은 직접손해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 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 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해자부담금) 도로를 손케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한다.

제 5조(원인자부담금 및 손해자부담금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해부분 및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 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 6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 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및복구비용산출방법

기존 포장 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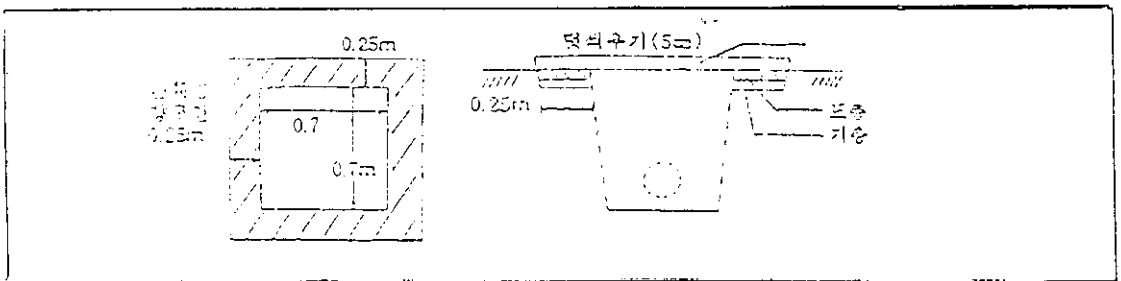
가. 최소굴착

-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70cm×70cm로 계산한다.
- 2) 간접손해 부분인 복구비용은 손케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케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1 참조)

3)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7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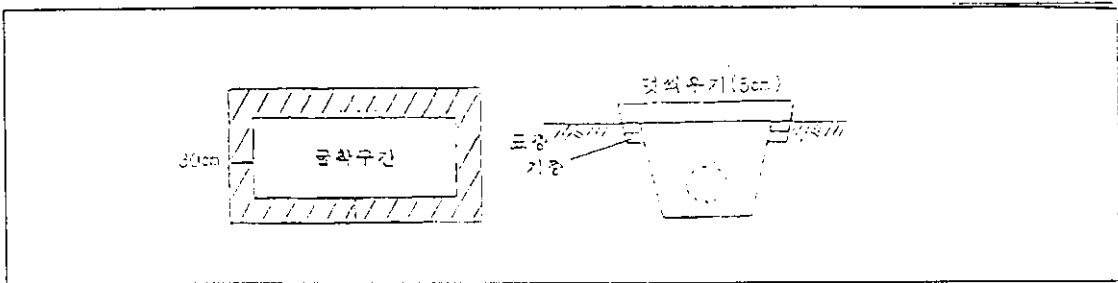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배는 1:0.3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간접손해부분인 복구비용은 손케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c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케영향구간 및 당해굴

차 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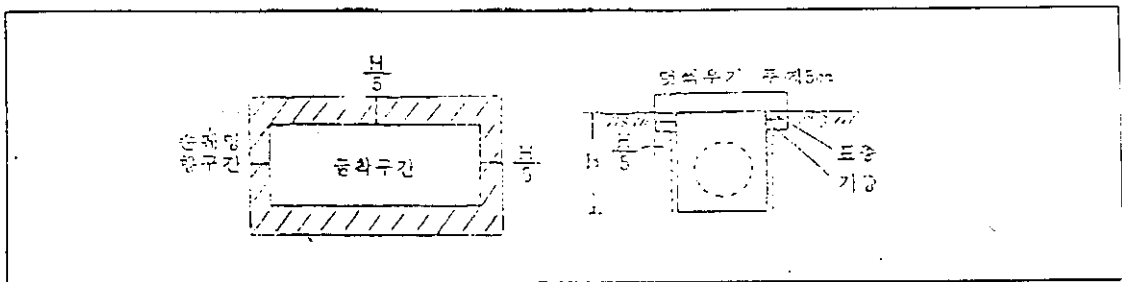
다만, 도로굴착시 컷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cm
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구간으로 한다.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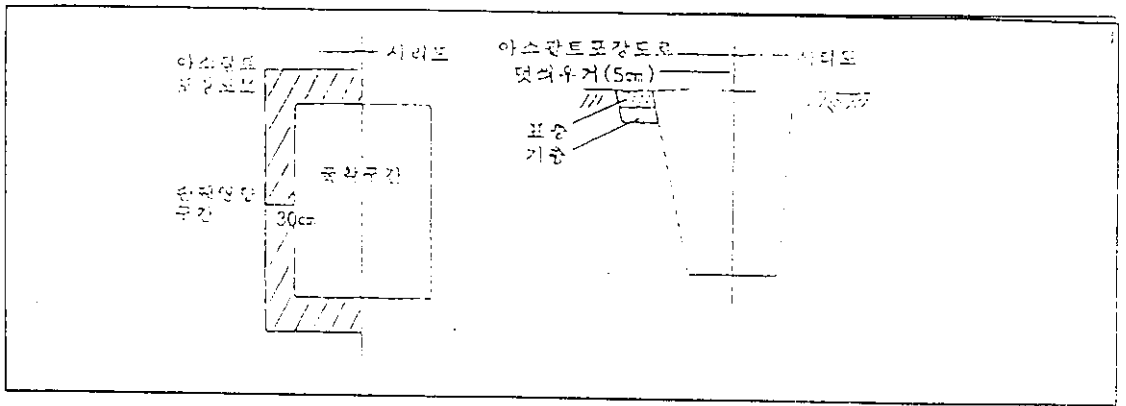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구간은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
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 2)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3 참조)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컷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궤영향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cm 추가 가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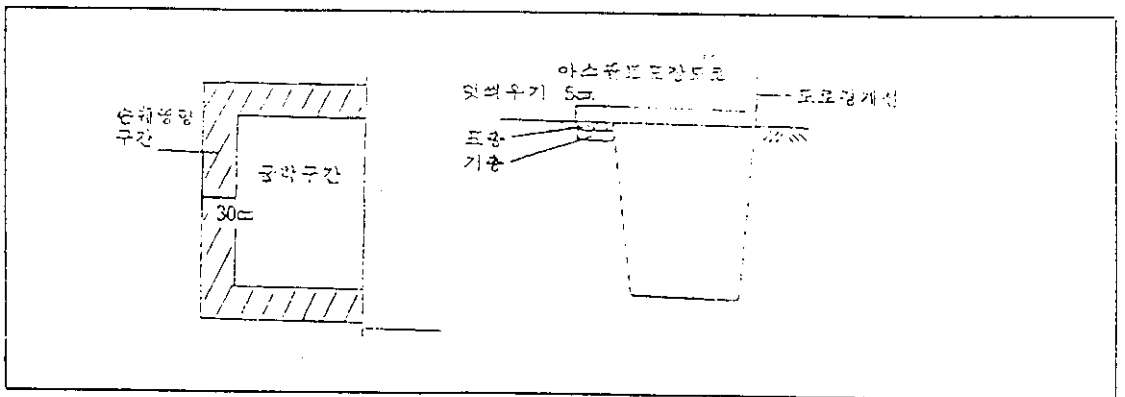
(그림 3)

라.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뜬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은 별표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 2) 순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로 보며, 간접순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 2)와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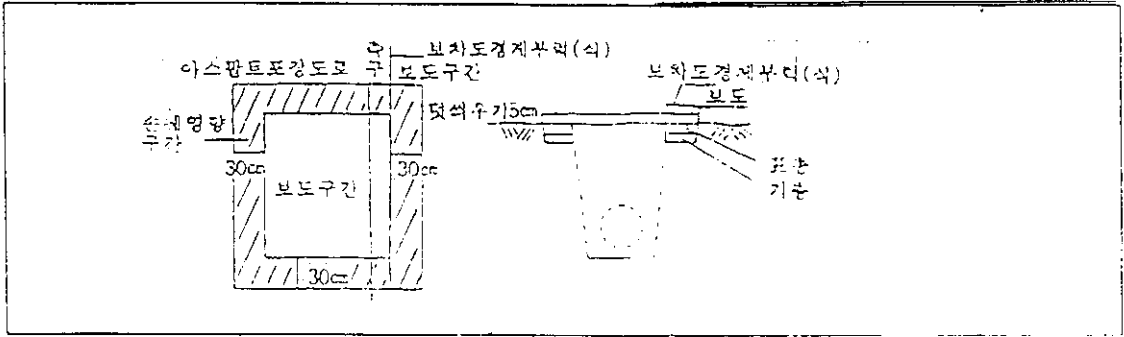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5)

-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해부분 복구비용 정수는 나뉘 2)와 같다. (그림 6 참조)



(그림 6)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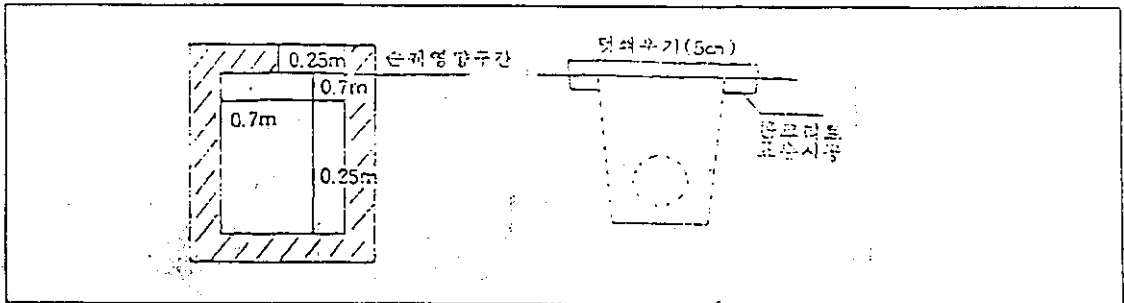
가. 최소굴착

-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70cm×70cm로 계산한다.
- 2) 간접손해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의 아스팔트 밧석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7 참조)

3) 소규모 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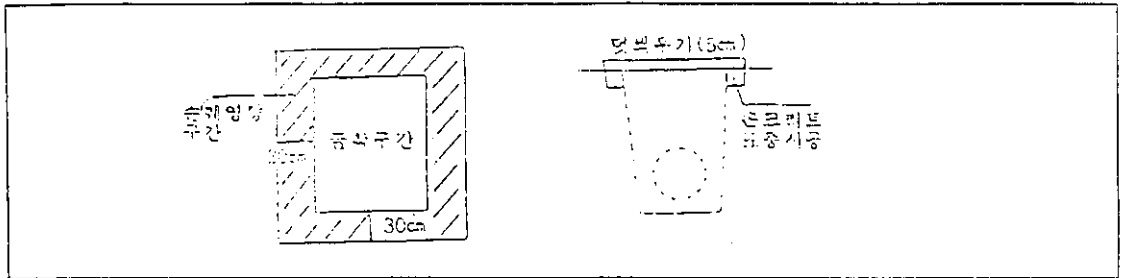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동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7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와 같다.



(그림 7) - 5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케영향구간의 면적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2) 간접손케구간의 복구비용은 손케영향구간의 별표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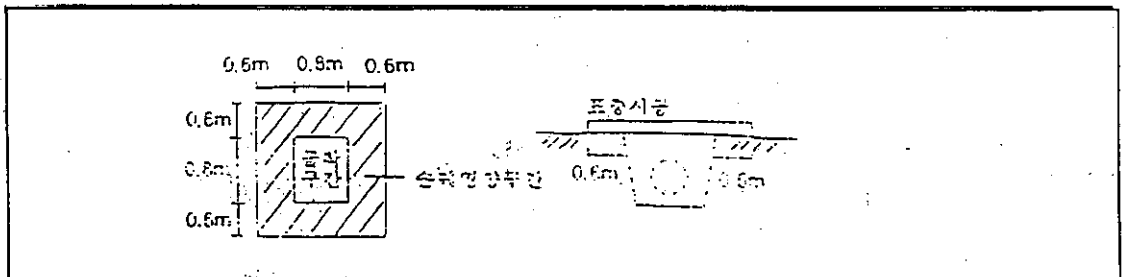
(그림 8)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 1) 보도 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 면적은 80cm×80cm로 계산한다.
- 2) 간접손케복구 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c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표층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그림9참조)
- 3) 소규모 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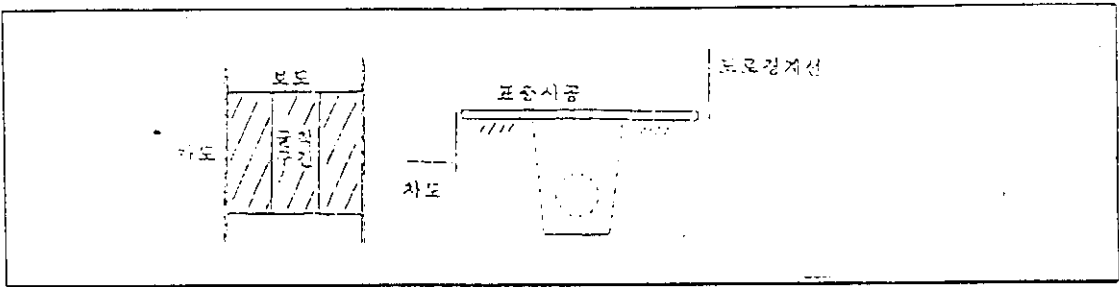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로서 나목 2)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80c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케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9)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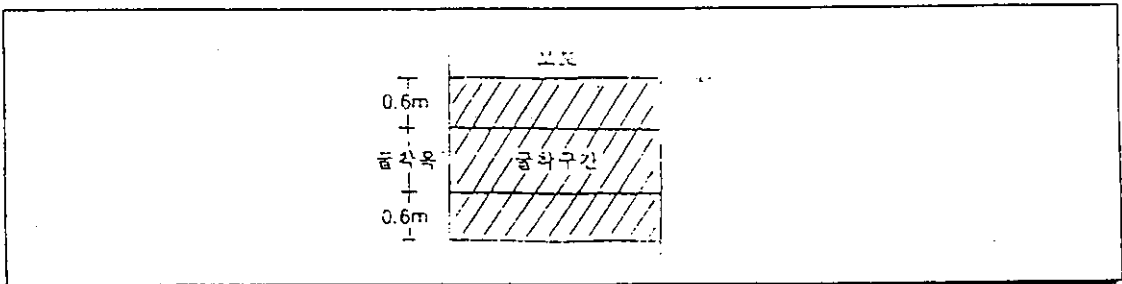
나. 보도를 증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간접순케 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그림10 참조)
-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순케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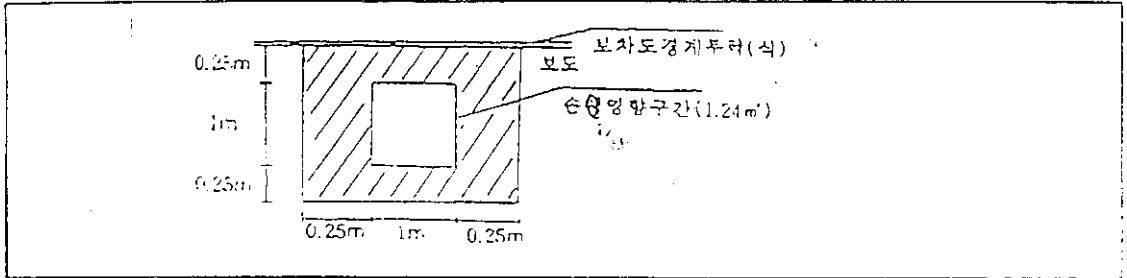
다.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순케 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나목 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11 참조)



(그림 11)

라.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00cm×100cm로 계산한다.
- 2) 간접순케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림12 참조)



(그림 12)

4. 특수 포장도로의 굴착 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순환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 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순환에 따른 직접 순환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순환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A.S.P 포장도로	표 층 5cm 기 층 20cm 보조기층 40cm	국도, 주요간선도로 (4차선)및 이에 준하는 도로	
	"	표 층 5cm 기 층 15cm 보조기층 35cm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 는 도로	
	"	표 층 5cm 기 층 15cm	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포장두께 20cm 보조기층 30cm	폭 6m이상도로	
	"	포장두께 15cm 보조기층 20cm	폭 6m미만도로	
보 도	일반보도 블 러	보도블럭표층 6cm 기 층 : 모래 15cm	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소형고압 블 러	소형고압블럭 표층 7cm 기 층 : 모래 15cm	"	
	오나멘트 타 일	오나멘트타일 표층 7cm 물 말(1:3) 3cm 콘크리트 기초 5cm	"	
	투수성 아스콘	투수성아스콘표층 3cm 기 층 10cm 모 래 5cm	"	
	기 타	기존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	
사 리 도	부설두께 10cm	교성군이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에는 주민 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에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토(점토질, 함수비과다 등)이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외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컷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시 공사전, 공사완료후 굴착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고성군청(건설과)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